

의안번호	2207836
의 퇴 인	이주영의원
회 답 일	2025.03.18.
추계번호	25C0634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비만관리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700만원, 2030년 600만원 등 5년간 총 9,100만원(연평균 1,82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61	-	-	-	-	61	12.2
비만관리위원회 (안 제9조)	6	6	6	6	6	30	6
합계	67	6	6	6	6	91	1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국가비만관리종합 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비만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비만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비만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비만 치료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4.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 진료, 치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비만 및 비만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작성, 수집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6.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 관리, 치료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소아,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비만 및 비만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제1항)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 (비만관리위원회)	○ 종합계획의 수립 등 비만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관리위원회를 둠(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 (통계자료 작성 및 역학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계획의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비만 및 비만질환의 유병률, 발생 위험 요인과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비만의 발생률 및 비만질환 발병률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거나, 비만 및 비만질환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 그 밖에 역학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1조 (연구·개발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비만질환의 예방, 진료 및 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1. 비만의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2.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12조 (예방·관리사업)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비만 및 비만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비만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12조 (예방·관리사업)	○ 1. 비만 및 비만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비만 및 비만질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3. 비만 및 비만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비만 및 비만질환 관련 상담인력, 의료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예방·관리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3조 (치료지원사업)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만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1.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만질환 진단비용, 치료비용의 지원 2. 치료가 필요한 비만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의 지원 3. 의료인이 비만 및 비만질환 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원 4. 비만질환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 그 밖에 치료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14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15조 (위임 및 위탁)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비만 및 비만질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1항) ○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비만 및 비만질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비만 및 비만질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16조 (비용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제12조에 따른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제13조에 따른 치료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 3.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재량규정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3~’27)」 수립을 위해 2022년 연구용역비 9,000만원 편성
2	안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3	안 제9조 (비만관리위원회)	○	
4	안 제10조 (통계자료 작성 및 역학조사)	×	○ 현재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비만 관련 설문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조사 외에 별도의 통계조사 및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참고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건강행태(비만 및 체중조절 포함), 영양섭취, 만성질환 등 500여개의 국민건강과 관련된 광범위한 설문을 진행함(2022년 조사 46억 8,100만원 소요)

5	안 제11조 (연구·개발 사업)	×	○ 비만에 대한 연구, 개발, 예방 관리 사업 등에 대한 명문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 확대 여부 및 그 규모를 가정하기 어려움 －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사업관리”의 내내역사업으로 ‘비만예방관리 및 정책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 기준 2억 8,700만원 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비만예방 관리사업 운영지원(지침·프로그램 개발, 실적 관리, 담당자 교육 등), 비만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국가 비만예방관리 정책지원 등을 이미 수행하고 있음
7	안 제12조 (예방·관리사업)		
8	안 제13조 (치료지원사업)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9	안 제14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제화에 따른 사업 확대에도 기관 기본 경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 세계 비만연맹 가입 및 사업 연계 사업비에 100만원 배정
10	안 제15조 (위임 및 위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1	안 제16조 (비용의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비만관리위원회(안 제9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 산출함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인 2024년 국민영양정책 및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운영지원 예산을 준용하여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환류 및 수립을 위한 지침 개발, 설명회 운영 등에 운영비 6,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추계 첫해인 2026년에 6,100만원이 소요되고 이후 운영비는 기관 기본 경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첫해에 운영지침,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후에는 기관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61	-	-	-	-	61	1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비만관리위원회(안 제9조)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에 비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회의 횟수와 위원회 위원 수 및 회의 수당의 곱으로 추계
- (회의 횟수) 현행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¹⁾

1) 음주폐해예방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에 따라 2021년 설치되었으며, 1년간(2022.07~2023.

- (위원 정수) 제정안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위원회 정원을 15명으로 하며,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위촉 위원은 10명으로 가정
 - 제정안 제9조제4항은 비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원장 1인과 공무원 4인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²⁾
- (회의 수당)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³⁾을 준용하여 1회 20만원으로 하며, 추계기간 중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600만원씩 5년간 총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비만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비만관리위원회 (안 제9조)	6	6	6	6	6	30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06) 본회의 2회(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2회 개최되었음

2) 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공무원 각 2인을 위원으로 가정함

3)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